

유가정책

1. 최근의 휘발유가격 인하 추이

국내 5개 정유사의 하나인 쌍용정유가 지난 4월 27일 당시 1당 614원이던 휘발유 소비자가격을 15원/1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다음 날인 4월 28일부터 1당 599원에 판매하기 시작함으로써 국내 정유회사간의 휘발유가격 인하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쌍용정유의 휘발유가격 인하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상공자원부는 현재의 정부관리 가격제도하에서 특정유종의 가격인하는 유가관리상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판단하에 5월 2일자로 쌍용정유에 대해 휘발유가격 인하사실여부 확인 및 인하폭에 대해 공식 답변을 요청하였다.

한편, 며칠간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던 다른 정유회사들도 쌍용정유측의 가격인하에 대응하여 5월 3일에는 경인에너지가 소비자가격을 1당 581원까지 낮춤으로써 고시 가격기준 33원/1을 인하하였고, 이어 5월 4일에는 호남정유도 33원/1, 현대정유는 35원/1 까지 인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당초 1당 15원만 인하하였던 쌍용정유도 5월 5일부터 18원/1을 추가 인하하여 33원/1 까지 낮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러한 가격인하경쟁이 모든 정유사로 확산되면서 정부는 5월 9일자로 쌍용정유를 제외한 다른 4사에 사실

최근의  
휘발유가격  
인하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

金 東 源  
(상공자원부 석유정책과장)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5월 2일자 정부질의에 대한 쌍용정유의 답변중에 명확치 않은 점이 있어 쌍용정유측에는 보완답변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사태진전 과정중 5월 15일에는 정부의 연동제 고시에 의해 휘발유고시가격이 종전의 1당 614원에서 610원으로 4원 인하되었다. 그러자 정유회사들은 다시 자사의 실제 판매가격을 580~581원/1에서 576~577원/1으로 1당 4원씩을 다시 인하함으로써 고시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를 33~34원/1로 유지토록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한편 5월 9일자로 상공자원부가 각 정유사에 요청한 가격인하 사실확인 및 인하폭에 대한 회신이 5월 17일경에 정부에 접수되었던 바, 각사별 가격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위의 회신내용을 분석한 결과 쌍용정유의 경우, 세전공장도가격을 12원/1 인하할 경우 소비자가격은 38.28원/1 인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폭은 33~34원/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1당 4~5원의 차액이 유통부문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유통부문에의 지원사실이 나타나게 되자 정부는 5월 25일 각

정유회사별 휘발유가격 인하내용('94. 5. 17 현재)

유 공	호 유	경 인	쌍 용	현 대
10.35	10.35	10.35	12.00	10.35

인하폭(세전공장도 기준, 원/1)

정유회사 및 유통업계에 대해 세전공장도가격 인하분은 전액 소비자가격 인하분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하는 공식서한을 보냈으며, 이러한 정부의 촉구를 받아들여 쌍용정유를 비롯한 각 정유회사는 소비자가격을 고시가격기준 39원/ℓ 인하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세전공장도가격을 12.22원/ℓ 인하한 상황에서 가격인하 경쟁은 소강상태를 보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 2. 최근의 휘발유가격 인하 영향

이러한 휘발유가격 인하경쟁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정유회사의 손익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재의 가격은 정부가 정유회사의 원가를 예상하여 각종 비용은 물론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이익을 포함하여 정한 것이므로 정유사의 자발적인 가격인하는 적정 이익

**정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경쟁은 국가  
경제적 측면이나 소비자의익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므로  
정유사가 자기부담으로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의 감소 나아가서는 큰 폭의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정유회사가 세전공장도 가격을 12원/ℓ 인하한 상태에서 1년을 지속한다면 정유5사 전체로 약 950~1,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손실규모는 작년에 정유5사가 시현한 1,038억원의 이익을 상쇄하는 수준이며, 만약 가격인하 경쟁이 다른 유종으로 확산되거나 유통부문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면 그 만큼 손실 규모가 커지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휘발유에 부과되고 있는 고율의 특수세를 감안할 때, 세전공장도 가격의 자율적 인하는 고시가격으로 판매하는데 비해 막대한 세수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정유사 단계에서의 1,000억원 수익감소는 1,900억원의 교통세수 감소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유통부문 확보를 목적으로 가격경쟁이 전개된다면 이는 예기치 않

정유5사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억원)

	1989	1990	1991	1992	1993
법 인 전 체 기 준	1,331 (9.1)	△110 (△0.6)	△475 (△1.6)	440 (1.4)	1,038 (2.7)
정 유 사 업 부 문	445 (5.1)	△769 (△6.2)	△1,259 (△6.5)	△330 (△1.5)	100(추정) (0.4)
(제 조 업 평 균)	(6.4)	(5.5)	(5.5)	(3.4)	(-)

\* ( )는 자기자본이익률, %

연동대상 유종

	휘 발 유	등 유	경 유	B-C유	B-A유	B-B유
내 수 비 중	8.0%	8.3%	24.3%	24.9%	0.5%	0.3%

계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 3. 휘발유가격 인하경쟁과 관련한 정부입장

#### (1) 가격인하경쟁에 대하여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최근의 정유사 휘발유가격 인하경쟁에 대해, 정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경쟁은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나 소비자이익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므로 정유사가 자기부담으로 가격인하등 고객사에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경쟁의 정도가 점차 격화되고 장기화되어 생산부문에 투자될 자금이 유통부문으로 가고, 설비현대화가 지연되어 국내석유산업의 체질약화와 국내 석유수급의 차질을 가져오게 될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과당경쟁의 자제를 유도할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정유회사들간의 가격인하경쟁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가격환원 조치도 취한 바 없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며, 아울러 일부 언론에 정부가 휘발유가격 환원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도된 것은, 가격인하경쟁이 과당경쟁화 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확대 해석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 (2) 휘발유가격 인하분의 타유종 가격에의 전가에 대하여

정부는 그동안 유가관리에 있어서 정유5사의 모든 유종에 대한 전체 수익과 비용(세후 자기자본이익률 10% 선반영분 포함)이 일치하도록 하는 원칙하에 국내석유 가격의 수준을 결정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를 때에는 현재의 유가들 안에서 휘발유의 고시가격을 인하시킬 경우, 원칙적으로 그로 인한 정유사 수익감소분을 경유 등 타유종 가격인상으로 보충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정유사들의 휘발유가격 인하는 정부의 개입없이 자기 부담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것이므로, 유가관리는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최고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며(즉 정부는 고시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계산하게 되며) 최근 휘발유가격 인하부담을 다른 유종으로 전가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 (3) 정유사간의 가격경쟁에 따른 유통부문의 추가이익 발생에 대하여

이와 같이 정유회사간의 가격경쟁은 소비자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용인되고 당연시되는 것이다. 만약 가격경쟁 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비자가 아닌 유통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

**정유회사간의  
가격경쟁 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비자가 아닌  
유통부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지 않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 (4) 유가연동제의 계속 실시에 대하여

최근 휘발유가격이 연동가격 이하에서 자율적으로 인하되었다 하더라도 유가연동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부고시가격 체제하에서 다만 가격고시를 매월 시행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유가연동제 실시를 중단하고 가격자유화를 실시할 경우 각 유종의 가격이 현재의 최고가격보다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자유화가 실시되고 제반여건이 갖추어질때까지는 유가연동제는 계속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가연동제 대상 유종은 6개 유종이므로, 그중 내수비중이 물량을 기준으로 8%에 불과한 휘발유 하나가 최고가격 이하에서 자유화된 것처럼 움직인다고 하여, 연동제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5) 유가자유화의 조기 실시에 대하여

정부는 이번 휘발유가격 인하경쟁

과 관련하여 몇몇 유종에 있어서는 이미 자유화의 시행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유가의 전면자유화를 앞당기고자 한다.

유가자유화를 앞당긴다는 의미는, 그동안 유가의 완전자유화는 「현재 실시 중인 유가연동제의 정착 결과를 보아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내에 추진」키로 되어 있으나 가능한 한 앞당겨서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실시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고 있다.

유가자유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정부, 연구기관, 관련업체 공동으로 유가자유화 추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유가자유화의 시기도 실무작업반에서 연구하게 될 것이며, 늦어도 금년말까지는 자유화에 관한 추진 스케줄 및 내용을 확정코자 한다.

아울러 유가자유화가 시행되기 전에 국제가격구조에 비해 왜곡되어 있는 국내 유종별 가격구조에 대해서도 기회되는 대로 이를 시정해 나갈 것이다. ♣

### 정부는

**이번 휘발유가격 인하 경쟁과  
관련하여 몇몇 유종에  
있어서는 이미 자유화 시행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  
조속한 시일내에 유가의 전면  
자유화를 앞당기고자 한다.**

## ■ 신 간 ■

#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94

대한석유협회 홍보실